



하 홍 준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여성의 지식재산권 활성화 방안

### 의 의

한국의 특허출원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 출원 침체가 경제활성화를 통해 그 침체국면을 벗어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국사회 잠재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잠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활용하는 것이다.

여성인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국가경쟁력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 하에 각국은 '여성을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와 고령사회를 대비한 국가 차원의 여성인력 양성과 장려를 위한 지원 정책 강화를 고려할 때 여성기업인과 여성발명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여성인력 양성 및 동원정책이 아직 그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사회의 여성 차별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즉,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적 유교문화의 잔재가 아직도 사회 전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계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비록 최근 들어 여성을 보호하고 양성평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일련의 법적·제도적 정비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참여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일부 남성의 부정적인 태도와 사회문화는 아직도 여성경제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기업인이나 여성발명가의 경제활동 및 연구활동 또한 많은 제약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발명가의 사회적 요구 이해와 실태조사, 그리고 연구활동을 제약하는 사회·문화적, 제도적 실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또한 전무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 하에서 여성발명가의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과정 및 상품화 또한 상당한 제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여성발명가(혹은 기업인)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위한 발명활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출원과정, 특허와 실용신안의 상품화과정 및 경영활동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인력' 양성과 활용을 통한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과도 거리가 있으며, 21세기 고령화시대에 여성인력의 활용 정도가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발명활동에 종사하는 이른바 '여성발명가'의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자 한다.

### 여성발명협회의 조직 정비 및 효율화

여성의 지식재산권 활성화방안을 위한 정책은 크게 여성발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사업과 여성발명의 특허출원유도 그리고 특허 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발명협회의 독자적인 사업개발과 이를 위한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

i) 이를 위하여 인터넷기반의 여성발명협회의 사업 추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발명협회 독자적인 홈페이지 구축은 물론 여성관련 Portal site 등에 여성발명협회 자체 홍보나 추진사업의 홍보를 위한 배너 광고 등의 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인터넷 환경의 이용이 필요하다. 여성발명 이슈에 대한 인지도의 향상은 결국 주부 여학생 등의 관심 유발과 그로 인한 참여의 확대가 주요한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 한편 홍보나 교육사업중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여성인구의 사회적 지위별 구분에 따른 세분화된 목적집단의 설정이 필요하다. 즉, 고학력 이공계전공의 여성과학자나 기존 연구소사업체 여성종사자들과 가사에 종사하는 주부들 그리고 중등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여자 중·고교생과 대학교에 재학중인 여대생 등 보다 세분화된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미 특허 등 산업재산권 일반에 대한 이해

와 권리획득에 적극적인 여성과학자나 이공계 여성기술인력들을 위해서는 지적권교육과 권리화 유도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고, 이와 유사한 이공계 대학 재학중인 여자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산학협조를 유도하거나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고 홍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초·중등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학생발명진흥사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발명진흥사업의 범주 안에서 여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사업과 교육사업을 전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부발명교실을 활성화하고 각종 지방자치단위별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 속에서의 발명의 주체로서 주부계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발명협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임직원의 숫자가 회장을 포함 불과 5인에 지나지 않고 이 또한 사무국장과 일반 행정직 여사무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이므로 새로이 여성발명협회 고유의 수요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려 하여도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발명진흥사업을 인터넷기반의 홍보 교육 사업과 여성발명의 사업화 사업 그리고 여성발명가의 민원처리 및 대외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정되는 사업들 각각의 담당인원 정도의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성발명협회의 특성상 여성발명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보다는 다양한 여성계층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될 것이고 각 지역별 여성발명가 등의 교류와 연락 등이 주요한 임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앙의 조

적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조직하더라도 지방조직들을 초기부터 활성화 시켜서 직접적인 홍보나 교육 및 지원의 체제를 갖추고 기타 지방의 여성단체들과 협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sup>1)</sup>

### 여성발명협회와 기존 발명진흥조직과의 협력의 활성화

i) 2001년 5월 22일 발명의 날 기념행사 이후 구상되었던 가칭 『발명단체협의회』와 『진흥사업지원단』의 구성안을 보면 여성발명협회를 포함한 여러 발명단체들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

특별히 특허기술 사업화, 특허기술평가 등 자금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원부분에 있어서 현재 산재되어 있는 각각의 발명단체들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발명특허기술 사업화의 경우 발명진흥회의 주도적인 『특허기술사업화』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화자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이는 타당한 사업수행의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각각의 발명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보다 넓은 계층의 발명가들에게 지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별히 여성발명가들의 특허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여성발명협회에 별도의 자금을 배정하여 지원사업을 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보다는 발명진흥사업단체 협의회 등을 통하여 여성발명가들의 특허를 사업화하기 유리한 환경을 현재의 사업화지원사업의 구도 하에서 도모함이 현실적이며 나아가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학생 계층과 일반 개인발명가 대상의 지원사업과 유기

적으로 연계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협의체의 구성이 어렵다면 기존의 특허사업화 협의회에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로 인하여 여성발명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수행 주체로서의 역할은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임무와 중복되고 이는 자칫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국발명진흥회와의 협조체제를 갖춘다는 전제하에 여성발명가들에게 사업에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ii) 여성발명의 특허출원유도, 즉 지식재산권 보유를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여성발명협회의 법적 역할의 범위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지원이나 개입보다는 지재권 교육과 제도의 소개 내지 가이드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영역의 사업에 있어서는 대학 및 연구소 그리고 변리업체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sup>2)</sup>

### 관련 정부부처간의 정책협치의 필요

여성발명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발명가에게 자금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특허청,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의 정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으로 여성발명협회 또는 이와 유사기관에서 이들 기관의 지원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협력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발명가가 이들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1) 권재열·표호건·이영우, 발명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계층별 발명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1.

수 있도록 홍보 또는 정책제휴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전문 상담요원제도의 운용

정부는 여성발명가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특허의 출원 등에 대한 정보를 여성발명가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특허출원과정에 관여하는 변리사나 혹은 특허상당기관의 역할 중요성을 사시한 것으로 특허출원 관련 상담원들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나 등록 작업에 대한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상품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도 함께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여성발명협회내에 여성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여성들이 자유롭게 상담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인력의 운용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자금 지원의 여성할당제 도입 검토

전체 여성발명가 중에서 과반수인 53.1%가 특허를 비롯하여 실용신안이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신속한 자금지원 및 자금지원 확대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발명가들이 출원하는 특허나 실용신안이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기술보증을 획득한 경우 여성발명가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제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여성발명가의 특허나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여성발명가의 자금지원 요구는 특허를 비롯하여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 출원과정에서부터 산업재산권의 상품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여성발명가의 이러한 요구는 자신의 재정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여성발명가의 발명활동 및 기업활동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용한 특허출원과 상품화과정에 소요되는 자금마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여성발명가들은 특허를 비롯하여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을 출원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수수료의 감면 및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특허나 실용신안의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리사에게 지불하는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대신 지불해 줌으로써 여성발명가의 비용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특허나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의 상품화 과정에 대한 자금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입지에 있는 여성발명가에게 있어 특허 및 실용신안의 상품화에 요구되는 비용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발명가들은 여성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기술성 및 상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및 법률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자문위원의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지원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화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음의 특허사업화 자금과 우수발명품제작지원비 등에 대한 여성할당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3년 특허사업화 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간

다하게 소개하면,<sup>3)</sup>

- ① 창업자금지원 : 신기술창업보육사업(70억), 중소벤처창업자금(600억)
- ② 특허기술 실용화 자금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30억), 산업기술개발용자금 중 특허과제(320억),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중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32억), 개발 및 특허 기술사업화 자금(250억), 디자인혁신상품개발지원사업(40억), 산업기술개발용자금 중 디자인과제(20억)
- ③ 특허기술 평가 및 거래지원 :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11억), 기술평가수수료지원사업(1억), 특허기술상설장터 시물레이션 제작 지원사업(5억), 특허기술거래촉진사업(15억),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18억), 기술이전비용지원사업(11억), 우수기술수출 지원사업(2억)
- ④ 기타 지원사업 : 외국출원비용지원(5억), 산업재산권 진단사업(3억), 특허사업화연수 실시, 기술우대보증사업, 기술평가보증사업, 우수품질인증지원사업, 신기술인증지원사업, 우수재활용인증지원사업, 우수발명우선 구매추천 등이다.

한편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은 발명인의 사기진작과 발명의욕을 고취하여 우수발명을 적극 유도하고 사업화를 촉진시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할 목적으로 내국인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가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의 심사청구에 의해 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된 발명·고안으로서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발명·고안(시작품보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에 대해 영세발명자 및 학생발명자는 제작비용의 전액 범위내 무상지원, 개인발명자는 제작비용의 90% 범위내 무상지원, 중소기업자는 제작비용의 80% 범위내 무상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작비 국고지원 최고 한도액은 3,000만원(2003년 기준)이다.

### 홍보지원

영세한 재정상태에 놓인 여성발명가의 경우 자신의 상품을 독자적으로 홍보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발명가를 비롯하여 여성중소기업 상품을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보를 요구하였다.

여기에 정부의 여성발명활동 및 특허출원과정을 여성발명가 및 여성경제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 또한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정부의 여성발명지원 및 특허출원 촉진제도가 적절하게 홍보되지 않고 있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홍보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대안정책은 '여성발명가'의 특허출원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 여성 스스로가 서류를 작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화교육 확대방안이다. 특허청은 최근 여성발명협회를 통해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여성의 지식재산권 이해 및 여성발명인의 저변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확대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한 일반 여성에 대한 특허 중요성 이해와 함께 여성발명가에 대한 특허출원 및 활용방안에 대한 심화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발특2004/8

3) 상세한 것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http://www.kipa.org> 참조.